白頭大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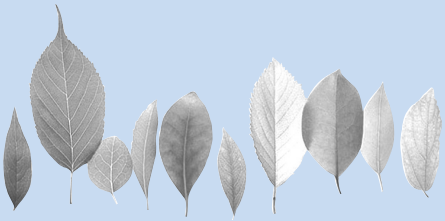

백두대간, 다시 태어나다 백두대간, 다시 태어나다 백두대간, 다시 태어나다 백두대간, 다시 태어나다

1. 백두대간 26만ha를 품에 안다 ● 210

특별한 2005년 시무식 / 도면 조정은 계속되고 / 치열했던 발자취는 기록으로 남아

보호지역 26만ha에 대한 비판 / 실체를 드러낸 백두대간보호지역

2. 주민을 위한 법 개정 ● 218

법 개정의 배경 / 법 개정 과정 / 주요 개정 내용

3. 주민소득 지원사업 ● 223

왜 필요한가 / 2005년도 소득지원사업

Ⅵ. 백두대간, 다시 태어나다

백두대간, 다시 태어나다 백두대간, 다시 태어나다 백두대간, 다시 태어나다 백두대간, 다시 태어나다

1 백두대간 26만ha를 품에 안다

특별한 2005년 시무식

2005년 새해가 밝았다. 2005년은 백두대간보호법이 시행되는 원년으로, 산림청 전 직원들에게는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 백 년 동안이나 우리 민족이 잊고 있었던 백두대간의 개념이 백두대간보호법으로 인해 되살아난 것이다.

특별한 한 해의 시작인만큼 산림청의 시무식도 남달랐다. 2005년도 산림청 시무식 장소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백두대간 정상이었다. 2005년 1월 3일 겨울의 한 가운데에서 산림청장과 산림공무원, 임업인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무식이 열렸다. 초속 16m의 강풍과 눈보라가 치던 혹한의 날씨였다. 산림청 직원들은 살을 에는 추위에 시무식 장소까지 올라가는 동안 불만을 품기도 하였다. 하지만, 혹독한 추위만큼이나 그곳에서의 시무식은 잊지못할 특별한 기억이 되었다.

대관령 정상에 올랐을 때 산림청장을 비롯해 산림청 직원들은 백두대간 보호법 제정부터 지나온 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갔다. 백두대간보호법이 제정되었던 환희의 순간과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계속돼온 힘든 나날! 모두 백두대간 골짜기에 다 묻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각오를 다졌다.

백두대간에서 시무식을 연 것은 산림청 개청 이래 처음이었다. 더구나 산림청 전 직원이 참석한 것은 물론이요, 임업인과 산림경영인 등이 동참하여 함께 시무식을 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특히 시무식이 열린 장소는 산림청이 지난 2002년 백두대간 생태복원을 위해 13㏊에 걸쳐 전나무와 분비나무 등을 조림한 곳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들은 만세삼창을 외치면서 백두대간 보호를 다짐하였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귀중한 자연 유산을 후세에게 온전히 물려주겠다는 다짐이 만세삼창과 함께 백두산천지에까지 가 닿는것만 같았다.

조연환 전 산림청장은 신년사를 대신해 자작시를 낭송하였다. '우리를 맞는 마루금에서 바람은 거세고 기온은 차가우나, 우리의 가슴은 불타고 기상은 드높다. 오라 산이여, 오라 숲이여, 오라 나무들이여….' 지금까지 온갖 난개발과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고통받고 몸살을 앓아온 백두대간이 일어나는 것만 같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거센 바람과 눈보라를 뚫고 해발 1,157m의 선자령까지 약 4km에 달하는 등반에 나섰다.

이 날 시무식을 통해 산림청은 다시 한 번 백두대간에 대한 보호의지를 다졌다. 백두대간과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염원과 함께 현장에서 산림행정을 실현하겠노라고… 굳건한 다짐과 각오를 백두대간 산줄기에 풀어놓았다.

| 백두대간 시무식 현장

| 백두대간 시무식 현장

도면 조정은 계속되고

2005년 1월 31일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자체안을 확정하였다. 총 면적은 약 26만ha(265,838ha)였으며, 이 중 핵심구역이 약 17만ha(171,161ha), 완충구역이 약 9만ha(94,677ha)였다.

산림청은 6개도 지자체 실무자를 불러 도면과 GIS도면 CD를 배부하였다. 그리고, 추진일정에 따라 지자체 조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정도면이 배부 된 후, 2005년 3월 16일부터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조정도면과 필지별조서가 제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5년 5월 2일 경남지역을 끝으로 조정도면 제출이 마감되었다.

지자체가 다시 제출한 조정안을 토대로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최종 조정안을 확정하였다. 최종 총면적은 약 26만ha(263,625ha)였으며 이 중 핵심구역이 17만ha(170,131ha), 완충구역이 9만ha(93,494ha)였다.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안) 시 · 군별 조정 면적

(단위 : ha)

구 분	기초(안)			지자체 조정(안)		
	계	핵심	완충	계	핵심	완충
계	535,918	242,477	293,441	249,965	171,311	78,654
강원	214,240	118,208	96,032	125,484	90,827	34,657
충북	74,394	30,896	43,498	40,739	19,894	20,845
전북	47,403	19,996	27,407	15,629	13,632	1,997
전남	14,866	6,313	8,553	3,544	3,544	–
경북	134,811	45,214	89,597	44,187	30,252	13,935
경남	50,204	21,850	28,354	20,382	13,162	7,220

치열했던 발자취는 기록으로 남아

2004년 6월 25일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대한 기초도면이 배부된 후, 산림청의 3차 조정도면이 나오기까지 약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 기간 동안 산림청 스스로도 경험하지 못한 진기한 기록들이 수록되었다.

그 중에서도 산림청이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각 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던 부분이 드러나는 기록이 있다. 정부와 전문가, 지자체, NGO는 물론 지역주민들과 함께 했던 242회의 현장설명회와 간담회가 그것이다. 보호지역 지정이 확정된 지금 생각해봐도 242회라는 기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었는지 산림청 스스로도 놀랍기만 하다. 또한 이 수치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그만큼 거셌고,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힘든 여정을 걸어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 이런 기록을 수록할 수 있었던 데는 조연환 산림청장의 영향이 컸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던만큼 산림청 직원들이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을 만난다는 것은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다. 때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어야 했고, 산림청에 몸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멱살을 잡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을 백두대간보호지역 설명회만 242회를 진행하였다. 가히 놀랄만한 기록이다.

어디 그것뿐인가. 3~4개월이라는 기간에 집중된 520여회의 언론대담과 홍보 또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을 확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년간이라고 해도 520회라면 하루에도 한 두 번은 꼬박 기사나 방송을 통해 백두대간보호법을 홍보했다는 이야기다. 제대로 된 보도를 위해 준비한 시간까지 따진다면 그 노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 과정에서 세운 산림청의 특별한 기록들은 그동안 산림청의 노고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더불어 백두대간 보호를 향한 산림청만의 남다른 열정과 애정까지도 그대로 담고 있다.

보호지역 26만ha에 대한 비판

약 1년여의 조정을 거쳐 2005년 5월 7일, 산림청은 드디어 26만ha라는 면적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확정하게 된다. 이는 지자체가 요구하였던 면적 약23만ha보다는 넓어진 면적이지만, 산림청이 처음 제시하였던 면적 54만ha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면적이다.

이에 대해 NGO측에서는 정부가 개발 의욕을 앞세운 지자체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산림청은 당시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NGO의 의견을 듣고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자 3차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2005년 5월 17일 산림청 소회의실에서 백두대간보전회, 녹색연합 등 4개 NGO와 산림청 직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 날 설명회에서 산림청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상황을 설명하면서 NGO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NGO 측에서는 확정된 보호지역의 상세도면과 그간의 조정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다. 상세도면을 검토한 후 다시 회의를 개최하자는 것이었다.

2005년 5월 31일과 6월 7일 두 차례 더 설명회를 거치면서 NGO의 구체적인 요구가 정리되었다. NGO측에서는 산림청이 공개한 세부도면을 검토한 후 의견을 주었는데, 당시 NGO의 요구사항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다음은 서면으로 제출한 NGO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NGO의 요구 의견

① 기초도면 54만ha에서 26ha로 축소한 조정 원칙과 기준 제시

② 농경지, 사유지, 취락지역, 도시화 된 지역, 기 개발 · 개발 예정지 면적 및 개발 예정지 현황과 제외 사유

③ 마루금 단절된 3개소(고성, 영동, 남원)도 보호지역으로 지정

④ 개발 압력으로부터 핵심 지역을 보호할 완충지역 확대

⑤ 백두대간에서 이어지는 정맥의 생태계 축을 보호지역으로 지정

NGO의 요구사항에 대한 산림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산림청의 검토 의견

① ②에 대하여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원칙과 기준 4항과 5항에 따라 제외하고, 개발 예정지 등에 대하여는 생태계, 개발가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

③에 대하여는, 일단 고성은 스키장 개발 예정지의 외곽지역을 생태연결 축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도로 등으로 단절된 추풍령 지역은 장기적으로 복구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또 남원 노치마을은 백두대간 생태마을 조성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④ ⑤에 대하여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 등은 추후 사유지 매수 등을 통하여 편입 · 지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였다. 지역주민의 생존권까지 박탈하며 처음부터 넓은 면적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산림청은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우선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차츰 그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NGO측에서는 보호할 지역은 처음부터 확실히 짚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산림청의 보호지역 지정은 NGO로부터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NGO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역이기주의나 여론에 밀려 축소 조정한 것은 아니었다.

2002년도에 정부가 동강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할 때도 이미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당시 거센 지역주민의 반발로 사유토지는 포기하고, 약 6천ha의 국 · 공유지만이 동강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결국 사유토지는 추후에 소유자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동강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주민의 협조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실체를 드러낸 백두대간보호지역

2005년 8월 30일, 드디어 백두대간의보호지역이 확정되었다. 684km에 이르는 거대한 산줄기로만 알고 있었던 백두대간이 약26만ha라는 범위를 갖게 됨으로써 그 실체를 드러내었다. 이 땅에서 백두대간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안은 2005년 7월 14일과 19일 각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2005년 8월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를 주재로 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에서 약 26만ha에 이르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이 최종 확정되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한반도 백두대간 중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에 이르는 남한지역의 산 능선(마루금) 및 주변지역에 지정되었다. 백두대간보호법에 근거하여 보호지역에서는 국방 · 군사시설, 도로 · 하천 · 철도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 백두대간보호지역 면적

구 분	필지(필)	편입 면적(ha)				국유토지	보전산지
		계	핵 심	완 충	비 율		
보호지역 구성비(%)	7,301	263,625 (100)	170,131 (65)	93,494 (35)	100	208,858	256,671
강 원 도	1,930	134,142	94,246	39,896	51	121,612	131,907
충청북도	701	35,615	12,001	23,614	14	22,663	35,503
전라북도	1,189	17,893	14,329	3,564	7	14,398	16,967
전라남도	21	5,155	3,353	1,802	2	3,512	5,154
경상북도	2,803	47,868	32,106	15,762	18	29,252	47,085
경상남도	657	22,952	14,096	8,856	8	17,421	20,055

백두대간보호지역은 총 약26만ha로, 핵심구역이 약17만ha, 완충구역 약9만ha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 국토의 2.6%에 해당하며, 여의도의 약 1,000배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이다. 보호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국유지가 약21만ha(79%)이며 공유지가 2만ha(8%), 사유지가 3만ha(13%)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별로는 강원도가 13만ha로 가장 넓고 다음으로는 경북, 충북, 경남, 전북, 전남 순이었다.

백두대간보호법 제정 이후 20개월이 넘는 긴 터널을 지나 얻은 값진 성과였다. 무엇보다 26만ha에 달하는 백두대간은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백두대간보호위원회 개최(2005. 8.30) 국무총리실

2 주민을 위한 법 개정

법 개정의 배경

백두대간을 잘 보전해야 한다는 욕심이 앞섰기 때문일까? 예상보다 격렬했던 지역주민의 반발은 결국 주민생존권 보장이 미약했던 백두대간보호법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다. 백두대간보호법은 보호지역 안에서의 각종 개발행위는 제한하고 있지만, 정작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지역주민과 토지 소유자에 대한 배려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2005년 2월 7일,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은 백두대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발의하였다. 이 때 이시종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였는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다. 당시 이시종 의원은 충북 충주시를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충주시 상모면 일대 월악산 자락이 보호지역에 편입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았다. 이시종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 법을 폐지하거나 시행시기를 1년 더 연기하자는 법률개정에 앞장섰다.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4년 연말, 법의 폐지 또는 연기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태에 직면하였다. 산림청은 2004년 12월 14일부터 이시종 의원과 만남을 가져 백두대간보호법의 필요성과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우선 법을 시행한 후에 개정을 하자는 쪽으로 설득하여 나갔다. 다행히도 설득이 받아들여져 백두대간보호법 시행 후인 2005년 2월 7일 법 개정을 발의하게 된 것이었다.

법 개정 과정

〈1〉 법률 개정 방향

개정할 법률내용의 큰 줄기는 보호지역 지정 과정에서 이미 정해졌다. 보호지역 지정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민지원대책과 허용행위확대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대표 발의자인 이시종 의원이 수렴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추가로 담기로 하였다. 보호지역은 반드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한해 점(點) 개념으로 최소면적으로 지정하고, 허용행위를 대폭 확대해 달라는 것이었다.

〈2〉 환경부와 협의

환경부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산림청은 보호지역의 원만한 지정을 위해서는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것이었다. 즉, 주민지원 및 허용행위를 확대하여 지자체 및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지 않으면 원활한 보호지역 지정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보호지역부터 지정한 다음에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었다.

산림청과 환경부는 2005년 2월 16일과 2005년 3월 25일 가진 2차례의 실무협의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2005년 3월 28일, 산림청 구길본 산림보호국장과 환경부의 김상일 자연정책국장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합의를 이끌어갔다. 그러나 결국에는 산림청장과 환경부차관까지 나선 끝에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은 환경부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3〉 개정안 설명회 및 당정협의

2005년 3월 2일 국회의원 회관 104호에서 이시종 의원 주재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 이강래 · 박세환 의원을 비롯하여 의원보좌관과 비서관 등 11명이 참석하였다. 이강래 의원은 전북 남원지역의 여론을 대변하면서 백두대간보호법을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뒤이어 박세환 의원까지도 보호지역의 축소를 주장하자 설명회는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법 개정에 대한 내용보다는 법의 폐지와 보호지역 축소에 대한 주장으로 개정안 설명회의 취지는 무색해질 상황에 처하였다.

초반부터 법 폐지 등 강경한 발언이 나오자 구길본 산림보호국장이 제지하고 나섰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설득하였다.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 백두대간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에 참석자 모두가 협조하기로 하였다.

임시국회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회 당정협의를 2005년 4월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하였다. 백두대간보호법 개정안 등 4건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백두대간보호법 개정안을 2005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되었다.

〈4〉 국회 심의

2005년 3월 2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백두대간보호법 개정법안에 대한 예비검토가 있었다. 이창희 수석전문위원은 수계관리기금의 사용은 해당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 완충구역에서 허용행위를 확대하면 완충구역으로서 의미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환경부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4월 임시국회에 상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2005년 4월 21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법안심사로는 비교적 긴 1시간 이상의 토론이 계속되었다. 쟁점이 되었던 내용은 허용행위를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를 두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즉,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핵심구역의 인가 · 허가 받은 석회석 노천채광에 대해 법에서도 허용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 강기갑 · 한광원 · 김우남 의원은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강기갑 의원은 개정안의 모든 허용행위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였는데, 법안의 심사를 차후로 연기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신중식 위원장도 찬성하였지만, 당시 산림청장이었던 제25대 조연환 청장의 끈질긴 설명과 설득으로 심사는 계속 이어졌다.

산림청은 광산개발이 이 법 개정의 핵심이 아니라 주민지원과 토지매수청구권 도입 등이 핵심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광산개발은 이미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법으로도 허용하도록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강기갑 의원은 법안 심사의 연기를 거듭 주장하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김명주 의원의 중재로 추후 별도로 자병산의 훼손실태를 확인하기로 하고, 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통과되었다.

2005년 4월 2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중식 법률안심사소위원장에게 백두대간보호법 개정안 심사보고를 마쳤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강기갑 의원이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광산개발을 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또다시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의사록까지 제시하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임을 설명하였다. 결국 2005년 5월 2일 백두대간보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다음날인 2005년 5월 3일, 백두대간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안 제24호로 상정되어 찬성 216표, 반대 22표, 기권 4표로 통과되었다. 백두대간보호법이 시행된 지 5개월 만에 새로운 개정 법률이 탄생하는 짧지만 멀고 긴 여정이 끝나는 시점이었다.

주요 개정 내용

개정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허용행위의 확대 및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률 개정으로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이 동참하는 범국민적인 백두대간 보호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 안의 주민 등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6가지이다.(제11조의 1)

| 주민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소득증대사업	농 · 림 · 축산업 관련 시설설치 및 유기영농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수도 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보전 · 이용시설	자연환경보전 · 이용시설의 설치 등
보호시설	백두대간의 복원 · 복구사업 또는 보호를 위한 시설 등
소득감소분 지원	생태계 · 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보호 · 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의 소득 감소분의 지원
기 타	주민의 생활편익, 소득 증대 또는 복지 증진 사업

둘째,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농가주택 · 농림축산시설, 완충구역에서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교육 · 홍보시설, 산지 외의 토지에서 개인묘지 · 납골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주민 불편을 줄였다. (제6조, 제7조)

셋째,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 또는 보호지역의 보호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유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제10조 내지 제10조의 2)

3 주민소득 지원사업

왜 필요한가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지키고 살아온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 백두대간은 32개 시 · 군 108개 읍 · 면 317개 리 · 동을 통과하고 있으며, 4만9천가구에 12만3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평균 2.5명/1가구당)

이들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속하는 지역은 그 동안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낙후되었던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그동안 투자의 효율성을 중시하여 평야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해 온 것이 사실이며, 백두대간 통과지역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생산기반이 미비하고, 생활환경 또한 열악하여 인구의 감소현상까지 초래되어 왔다. 더구나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 기회마저 박탈될 소지가 높아 이 상태에서는 백두대간의 효율적 보호가 곤란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보호와 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세대별 인구수 현황

구 분	계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편입면적(천ha)	263	134	35	18	5	48	23
사유지면적(천ha)	34.5	11.4	5.4	2.6	0.8	13.2	1.1
시 · 군(개)	32	12	6	3	1	6	4
세대수(천세대)	49.3	24.0	5.4	4.9	0.6	11.6	2.8
인구수(천명)	123	60	14	12	2	29	6

한편, 백두대간보호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국민들의 휴양 · 자연학습 등 천혜의 공간을 제공해 왔다. 또, 수자원 함양과 국토의 보전 등 온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중시하는 측면에서라도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세제혜택 등 정책적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최근에는 농촌 및 산촌지역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정부에서 직접 보조를 확대하는 추세였으나 그나마 대부분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만 편중되어 왔다.

이에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간접적으로는 최고의 휴양공간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5년도 소득지원사업

2005년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소득지원사업은 1개 시 · 군 당 2억2천5백만원씩(국고 70%, 지방비 30%), 32개 시 · 군에 대해 72억원(국비50억4천만 원, 지방비 21억6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소득지원사업의 종류는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설치 및 유기영농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임산물재배사업(장뇌, 송이, 산채, 더덕, 표고 등) 및 농 · 임산물 생산단지 육성 등이 있다.

| 2005년도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도 별	개 소	사 업 비 (농특)		
		합 계	국 고 보 조	지 방 비
계	32	7,200	5,040	2,160
강 원	12	2,700	1,890	810
충 북	6	1,350	945	405
전 북	3	675	472	203
전 남	1	225	158	67
경 북	6	1,350	945	405
경 남	4	900	630	270